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검 토 보 고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 체계 마련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45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9
2. 조문별 검토	10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9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6
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19
라. 무용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안 제8조부터 14조까지)	24
마. 국립무용원(안 제15조)	32
바. 학교 등의 무용 진흥(안 제16조)	32
사. 소외계층 무용 진흥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안 제17조 및 제18조)	3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6. 19.

다. 회 부 일 : 2025. 6.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인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미술·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등으로 분류됨¹⁾.

[무용의 의미 및 범주]

구 분	의 미	범 주
무용	· (순수무용)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기하학적이고 예술적인 선을 그려내는 춤사위 혹은 순수하게 추어졌던 역사가 깊은 춤	- 발레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실용무용) 모든 사람 또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	- 벨리 댄스 - 방송 댄스 - 스트리트 댄스

자료: 국립무용원 건립 타당성조사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21)

- 무용은 기초예술의 핵심적인 장르로 지속적인 발전과 대중화가 요구되나, 2023년 기준 무용 분야 공연 단체는 전체 공연예술 단체 중 11%(478개)에 불과하고, 공연 평균 티켓 판매액과 공연 실적도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²⁾, 무용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2024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참고] 무용 관련 통계 참조

[무용 공연단체 운영 현황]

구분	단체수 (개)	종사자 수 (명)	재정자립도 (%)
전체	4,332	70,794	62.6
연극	1,085	10,861	57.8
뮤지컬	290	2,694	100.8
서양음악	1,467	37,313	34.5
국악	762	11,175	16.6
무용	478	6,003	35.4
비중(%)	11.0%	8.5%	
복합	250	2,718	82.7

자료: 2024년 공연예술조사

[무용단체 공연실적]

구분	공연건수 (건)	공연횟수 (회)	티켓예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유료관객비중 (%)	평균티켓가격 (원)
전체	15,882	101,028	15,044,655	647,238	79.5	43,021
연극	2,695	49,070	2,705,242	62,944	85.3	23,268
뮤지컬	3,181	38,828	8,048,484	459,003	86.0	57,030
서양음악	7,593	8,566	3,064,380	98,549	62.6	32,159
국악	1,182	1,932	410,667	4,632	59.0	11,280
무용	819	1,535	591,003	18,842	74.7	31,881
비중(%)	5.2%	1.5%	3.9%	2.9%		
복합	412	1,097	224,879	3,268	54.7	14,530

자료: 2024년 공연예술조사

- 현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³⁾과 「공연법」⁴⁾ 상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명시되고 있을 뿐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 법률이 없어 무용 고유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문화예술 분야 장르별 입법 현황]

분야	관련법	비고
문학	「문학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무용	-	「공연법」에 포괄
연극	-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예(演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연법」	
국악	「국악진흥법」	
사진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⁵⁾ 문체위 계류
건축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	제21대국회에서 「건축예술진흥법안」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어문	「국어기본법」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뮤지컬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⁶⁾ 문체위 계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4)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 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2025.4.10.), 의안번호 제2209703호

- 이에 제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 문학, 미술, 국악 등과 같이 개별 법률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용 분야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무용의 진흥과 무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용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제정안은 무용의 범주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생활무용 등으로 확장하고, 무용인의 범위를 창작 및 공연뿐 아니라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로 확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계나 무용계에서 통용되는 무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창작·실연 외 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무용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계 및 무용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국립무용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립무용원 신설은 가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재정

6)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2024.6.21.), 의안번호 제2200793호

소요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무용 지원기관·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선행이 필요함.

○ 한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기존의 법령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장르별로 개별 법령 체계하에서 상이하게 지원할 경우 장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또한, 국립무용원은 무용 진흥을 위한 유사한 기관(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에 한정된 별도 조직 신설에 해당하므로 기능 중복, 무용에 한해 추가 조직을 운영해야 할 실익이 낮으므로 현행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 ‘무용의 날’ 기념일 지정은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이 필요하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체계를 마련하려는 「무용진흥법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회부되었

으므로, 법안 심사 시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4,000만원(연평균 4,8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90					90	18
실태조사 (안 제12조)	150	-	-	-	-	150	30
합 계	240					240	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7) 「무용진흥법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720호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본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제10조(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무용 창작 지원) 제12조(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제13조(무용문화산업의 진흥) 제14조(무용의 날) 제15조(국립무용원) 제16조(학교 등의 무용 진흥) 제17조(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 제18조(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무용 창작·교육·향유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무용, 무용인, 무용문화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재정 확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법률 관계 규정임.

제 정 안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용”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예술로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및 생활무용을 말한다.
2. “무용인”이란 무용과 관련된 창작·공연·교육·비평·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용문화산업”이란 무용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무용을 이용하

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총칙적 규정으로, 개별 예술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기본 구조나 입법 방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항
국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3. ~ 14.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무용’을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로 표현한 예술”로 규정하면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생활무용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무용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각종 연구와 조사에서 일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용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용’을 문화예술이나 공연의 한 장르로 명시하고 있으나, 무용 자체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⁸⁾.

○ 무용의 정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은 무용을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로 표현한 예술로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생활무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용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의 정의에 대해 학술적 정의나 무용계에서 통용되는 정의가 없는 상황이며, 통상 예술 장르로서의 무용의 범주에 실용무용(대중무용), 생활무용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 무용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신체를 이용한 동작’, ‘감정과 의지의 표현’, ‘예술성’, ‘음악, 리듬 또는 율동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음악, 리듬 또는 율동”의 특성을 무용의 정의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계 및 업계를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무용의 정의]

【무용의 정의】

-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은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여 육체의 내적·외적 행동을 통해 감정·정경·상황 등을 표현하는 예술 행사”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 (전통무용)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하여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 무용 (표준국어대사전)
- ▷ (한국무용) 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하여 오던 고전 무용 (표준국어대사전)
②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생성되고 전승되어온 무용 일체를 가리키며, 한국적 미형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창작무용까지를 포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고전무용)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민족 고유의 무용 (표준국어대사전)

【무용의 의미 및 범주】

구 분	의 미	범 주
무용	· (순수무용)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활용하여 기하학적이고 예술적인 선을 그려내는 춤사위 혹은 순수하게 추어졌던 역사가 깊은 춤	- 발레 - 현대무용 - 한국무용
	· (실용무용) 모든 사람 또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	- 벨리 댄스 - 방송 댄스

		- 스트리트 댄스
*출처 : 국립무용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2021. 11월)		
【실용무용】 *정의 부재 ▷ (특징)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연결, 실용적 목적을 가진 무용 ▷ (예시) K-POP 댄스, 스트리트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등 【생활무용】 *정의 부재 ▷ (특징) 취미·건강·여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으로, 예술성이나 직업적 목표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즐거움에 초점 ▷ (예시) 줌바댄스, 에어로빅 댄스, 라인댄스, 사교댄스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안 제2조제2호는 “무용인”을 “무용과 관련된 창작·공연·교육·비평·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무용 창작자뿐만 아니라 교육자, 연구자, 비평가 등 무용 생태계 전반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을 포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유사 입법례인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에서는 해당 예술 분야 종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인”을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과는 차이를 보임⁹⁾. 무용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무용인의 범위가 각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혜자 범위 설정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용인”의

9)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무용인의 정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무용계에 통용되는 무용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창작, 실연 이외에 무용과 관련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무용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으므로 학계, 무용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무용 교육 및 무용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사항

- 안 제5조와 제6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규정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실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유사 입법례인 「국악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등 문화예술 분야의 개별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바,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¹⁰⁾.
- 한편, 현행 제도상으로는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조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현황에

10) 「국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문화예술활동조사’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¹¹⁾. 그러나 무용 분야에 특화된 정기적 조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과거 ‘전문무용수실태조사’가 3차례(2007년, 2013년, 2017년) 간헐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해당 조사만으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무용 및 무용산업의 실태조사를 제도적으로 정기화하고, 그 조사 결과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무용인 지원, 창작환경 개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부수용 의견임.

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7조는 무용 창작활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1) 2005년부터 매년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운영실태 등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조사(예술인경영지원센터)’가 실시되고 있으며, 1988년부터는 문화예술 관람 및 교육활동 등을 포함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를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2020년부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 실태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교육조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를 실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무용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저작권법」 제4조¹²⁾는 무용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

12)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으며, 이에 따라 무용 창작물은 공표권·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¹³⁾과 함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¹⁴⁾의 보호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3)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4)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무용은 즉흥적인 요소가 많으며 공연이 끝나면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타 장르에 비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움 실정임¹⁵⁾. 최근에는 K-Pop 안무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⁶⁾.
- 이에 따라 제정안 제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용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침해 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용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무용문화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안 제7조제1항의 표현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¹⁷⁾.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5) 이데일리, “첫 걸음 댄 무용저작권 논의, 결과로 이어져야”, 2019.9.30.

16) 연합뉴스, ‘케데헌’ 안무 참여한 리정 “‘소다 팝’ 듣자마자 어깨춤 떠올라”, 2025.7.25.

17)

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무용 창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u>지식재산권 보호시책</u>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u>지식재산권 보호시책</u>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 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u>지식재산권 보호시책</u>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u>보호</u> 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 <u>보호</u> 시책을 강구하여야-----. ② ~④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라. 무용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안 제8조부터 14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용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안 제9조),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안 제10조),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안 제11조), 무용 향유 문화 확산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안 제12조), 무용문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안 제13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무용의 날’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

제 정 안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무용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진흥을 위하여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무용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무용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무용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무용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무용의 날) 무용의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무용의 날을 지정한다.

2) 검토사항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창작활동 지원, 무용향유 문화 활성화, 무용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무용의 날 지정 등 무용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용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임.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 설치, 문화산업 육성, 예술단체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용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포함되어 있음¹⁸⁾.

○ 그러나 무용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문예기금을 통한 일부 산발적 지원(2025년 기준 39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무용 분야 문예기금 지원 현황]

사 업 명	지원 예산(백만원)	선정 건수
ARKO사업 연계 해외진출지원	65	1
공연예술 창작산실_2차 제작지원	198	3
공연예술 창작산실_올해의신작(무용)	275	11
공연예술 창작주체(공연제작)	1,256	12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339	4
국제협업지원	46	1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750	11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	1,008	28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10	1
총 계	3,947	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 공모심사 결과 발표(2024.12.31.) 기준

- 1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이에 제정안은 제8조부터 제14조에서 무용의 예술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용인의 창작 기반 강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유사 입법례로는 「국악진흥법」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도 창작활동 지원, 향유문화 확대, 문화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관련 단체 지원, 기념일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
국악진흥법	제8조(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대해 전부 수용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교육부는 안 제8조에서 대학을 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대학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 의무 조문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⁹⁾.

19)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 제14조에서 규정한 ‘무용의 날’ 지정에 대해, 기념일 지정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기념일 지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²⁰⁾.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는 「국악진흥법」에 따른 국악의 날, 「바둑진흥법」에 따른 바둑의 날, 「씨름진흥법」에 따른 씨름의 날 등이 있음²¹⁾.

- 20)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 2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기념일	근거 법률
국악의 날	「국악진흥법」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도서관의 날	「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문화의 날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마. 국립무용원(안 제15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무용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무용원을 설치하고, 무용 관련 조사·연구, 공연 제작·보급, 교육·자료 개발, 국내외 교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 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국립무용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둔다.
	② 국립무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바둑의 날	「바둑진흥법」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스포츠의 날	「스포츠기본법」 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씨름의 날	「씨름진흥법」 제7조(씨름의 날)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태권도의 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한국수어의 날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한글 점자의 날	「점자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2. 무용 공연의 제작 및 보급 지원
 3. 무용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4. 무용교육 및 자료 개발
 5.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6. 그 밖에 무용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보급 및 발전 등을 위하여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사항

- 현재 무용 관련 진흥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무용을 기초예술의 한 분야로 포함하여 공연 및 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²⁾.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의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의 무용단 등은 무용 창작 및 공연 개발·보급,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2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무용 진흥 기관 현황]

구 분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
조직/ 인원	- 1국, 4팀 - 정원 94명, 현 원 93명	- 1국 5팀 - 정원 17명, 현 원 16명	- 국립극장 소속 단체 - 정원 70명, 현 원 52명	- 국립국악원 소 속단체 - 정원 54명, 현 원 49명
예산	- 18,980백만원(국 고+자체) - 14,164백만원(국 고)	- 8,038백만원(국 고+자체) - 7,238백만원(국 고)	- 4,494백만원	- 3,170백만원
주요 사업	- 국내외 우수 레 퍼토리 및 창작 발레 공연 - 발레예술의 국 내외 교류사업 등	-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과 공연 - 현대무용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 발 등	- 전통 춤의 원형 재현 - 한국무용 창작 공연 - 정기·특별·기 획·지방·해외 공연	- 궁중무용 복원· 재현 - 민속무용 전승· 한국무용 창작 공연 - 정기·특별·기 획·지방·해외 공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무용계 등을 중심으로 무용의 진흥 및 향유 확대를 위해 전용 공연장을 포함하여 창작·협업·공연·교육·연구 등 다양한 무용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 공간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²³⁾,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설립 필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음²⁴⁾.

○ 이에 안 제15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국립무용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지방무용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23) 연합뉴스, “무용계 ‘국립무용원 건립해 K-무용 세계화 발판 삼자’”, 2023.4.27.

24) 제22대국회 제423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3.5.), 제21대국회 제41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23.10.23.), 제21대국회 제407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7.7.) 회의록 등 참조

으로, 무용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보급 환경을 조성하고, 무용 관련 교류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로는 「국악진흥법」 제15조의 국립국악원 설치 규정이 있음.

「국악진흥법」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계승·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안 제15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무용원 신설은 가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무용 지원기관·단체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안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립무용원은 무용 진흥을 위한 유사한 기관(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에 한정된 별도 조직 신설

에 해당하므로 기능 중복, 무용에 한해 추가 조직을 운영해야 할 실익이 낮으므로 현행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임.

바. 학교 등의 무용 진흥(안 제16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16조(학교 등의 무용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 에 구성원의 정서와 교양을 위하여 무용과 관련된 활동 단체를 두 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 안 제16조는 학교 및 직장에서 무용 관련 단체 활동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무용 교육의 확대와 무용 활동 지원을 통해 무용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에서의 무용 관련 활동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선호와 희망에 따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선택적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조항은 학교 내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 수요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5)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내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소외계층 무용 진흥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안 제17조 및 제18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7조와 제18조는 각각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7조(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외계층(이하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무용 창작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대상 무용 창작 및 교육 사업과 무용 관련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과 관련된 직업 창출,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직업분류 개발 등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인의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사업 및 무용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²⁶⁾,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²⁷⁾.

○ 또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직업적 권리 신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장애, 소득 등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²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

26)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7)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8)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

원센터는 무용인의 직업 전환과 창작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용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 장려 및 창작·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용의 접근성과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17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부수용 의견임.

○ 한편, 안 제18조는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무용인의 복지 향상과 예술 활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8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용의 정의 및 범주, 그리고 창작·실연 이외에 무용과 관련한 활동하는 모든 사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람을 무용인의 범위에 포함할 지에 대해 학계 및 무용계의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유사 입법례인 「국악진흥법」, 「미술진흥법」은 해당 예술 분야 종사자의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²⁹⁾.

문 의 처

02)6788-5384

29) 「국악진흥법」 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단체현황) 총 4,332개 공연단체 중 **무용단체는 478개(11%)***
 * 국립 3, 공립(광역) 12, 공립(기초) 10, 민간 공연단체 424, 민간 기획사 29
- (인력현황) **무용단체 종사자는 6,003명**(단원 5,048명*, 지원인력 985명)
 * 고용형태별: 정규직 1,251(20.8%), 비정규직 4,752(79.2%)
- (공연실적) 무용단체의 **연간 공연실적은 총 819건 공연**, 티켓판매수는 591,003(매)로 **전체 공연 관람객의 3.93% 수준**

【무용단체 공연실적】

구분	단체수(개)	공연건수(건)	공연횟수(회)	티켓판매수(건)
전체	4,332	15,882	101,028	15,044,655
무용	478	819	1,535	591,033
비율(%)	11.1	5.1	1.5	3.93

- (재정자립도) 공연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62.6%, **무용단체의 평균은 35.4%**
 * 재정자립도(%) = 매출액(자체수입+기타수입)/총 지출액 x 100
- (연습실 보유현황) 478개 무용단체 중 353개* 단체(73.8%) 연습실 보유
 * 보유형태별: 소유 51개 단체, 임대 302개 단체
- (공연장 운영현황) 478개 무용단체 중 199개* 단체(41.6%) 공연장 운영
 * 보유형태별: 소유 28개 단체, 임대 171개 단체
- (4대보험 가입현황) 478개 무용단체 중 325개* 단체(68%)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37개(11.4%), 건강보험 76개(23.5%), 고용보험 155개(47.6%), 산재보험 260개(79.9%)
- (유료관객 비율) 공연단체 평균 79.5%, **무용단체 74.7%**

□ 지역 무용단 현황

지역	국립	광역공립	기초공립	민간단체	민간기획	계
경기	-	1	1	71	7	80
강원	-	1	-	15	-	16
경남	-	-	1	13	-	14
경북	-	1	2	9	1	13
광주	-	1	-	6	-	7
대구	-	1	-	20	4	25
대전	-	1	-	12	1	14
부산	-	1	-	29	1	31
서울	3	1	-	185	10	199
울산	-	1	-	9	-	10
인천	-	1	-	12	1	14
전남	-	-	1	3	-	4
전북	-	1	2	16	1	20
제주	-	1	-	3	-	4
충남	-	-	2	8	2	12
충북	-	-	1	5	-	6
세종	-	-	-	8	1	9
계	3	12	10	416	28	478